

제 55 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식회사삼일씨엔에스의 제 55 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최 일시: 2021 년 03 월 30 일 (화) 오전 09:00
2. 개최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 길 19 페럼타워 3 층 페럼홀
3. 회의 목적사항
 - 가. 보고 안건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나. 부의 안건
 - ◎ 제 1 호 의안 : 제 55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 목적 추가 등)
 - ◎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윤기석, 윤창용)
 - ◎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별첨 : 1. 참석장 1 부
2.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끝.

2021 년 03 월 12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 길 16
주식회사삼일씨엔에스
대표이사 정 용 근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본인신분증

※ 주주총회 직접 참석 시 유의사항(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 위험지역 방문자,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 등의 감염의심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회장 입구에서 체온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첨부 1]

참 석 장

1. 회의명칭: (주)삼일씨엔에스 제 55 기 정기 주주총회
2. 개최일시: 2021 년 03 월 30 일 화요일 오전 09:00
3. 회의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 5 길 19 페럼타워 3 층 페럼홀
4. 보유 주식수: _____ 주

주 소 :

주 주 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주 1) 주주님께서 직접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장에 기명날인 하시어 당일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 날인시에는 반드시 인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제 55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55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54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3월 30일	처분확정일	2020년 3월 27일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단위: 천원)		
과 목	달 기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54,400,792		156,058,47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5,326,281		153,790,259	
2.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3. 당기순이익(손실)	(1,035,553)		2,682,983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0,064		(414,766)	
II. 이익잉여금처분액				732,195
1. 이익준비금			48,381	
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주1)			200,000	
3.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전기: 38원(3.8%)			483,814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4,400,792		155,326,28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03.15일 금융감독원에 공시(DART)된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2021.03.22일 금융감독원공시(DART) 예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3]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재 정관	변경 정관	변경 사유
<p>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콘크리트, 레미콘, 강관, 철골 제품 제조, 시공 및 판매업 (이하 생략)</p> <p>16. 기타 전기 사항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일체</p>	<p>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콘크리트, 레미콘, 강관, 철골 제품 제조, 시공 및 판매업 (이하 생략)</p> <p>16. <u>대체에너지에 관한 일체의 사업</u> 17. <u>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u> 18. 기타 전기 사항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일체</p>	<p>목적사업 추가</p>
<p>제 4 조 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daelimcns.co.kr)에 게재한다. (이하 생략)</p>	<p>제 4 조 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esamilcns.com)에 게재한다. (이하 생략)</p>	<p>홈페이지 주소 변경</p>
<p>제 12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생략)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제 12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생략)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u>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u></p>	<p>사채의 전자등록 예외 근거</p>
<p>제 13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생략)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생략)필요한 경우 <u>제10조 제1항 제1호</u>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하 생략)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생략) 범위 내에서 <u>제10조 제1항 1호</u> 외의 방법으</p>	<p>제 13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생략)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생략)필요한 경우 <u>제9조 제1항 제1호</u>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하 생략)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생략) 범위 내에서 <u>제9조 제1항 1호</u> 외의 방법으</p>	<p>정관변경에 따른 참조 정정</p>

<p>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하 생략)</p> <p>제 16 조 소집권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u>제 33조 제 2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p>제 17 조 소집통지 및 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u>총회일 2주전에</u>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daelimcns.co.kr)에 게재한다. (이하 생략) <p>제 19 조 총회의 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u>제 33조 제 2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p>제 30 조 이사의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u>제28조에서</u>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외 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u>제28조의</u>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p>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하 생략)</p> <p>제 16 조 소집권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u>제 32조 제 2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p>제 17 조 소집통지 및 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u>총회일 2주간전에</u>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esamilcns.com)에 게재한다. (이하 생략) <p>제 19 조 총회의 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u>제 32조 제 2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p>제 30 조 이사의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u>제27조에서</u>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외 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u>제27조의</u>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p>정관변경에 따른 참조 정정</p> <p>문구 수정</p> <p>홈페이지 주소 변경</p> <p>정관변경에 따른 참조 정정</p> <p>정관변경에 따른 참조 정정</p>
---	--	--

<p>제 32 조 이사의 직무</p> <p>1. 생략</p> <p>2.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u>위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 36 조 위원회</p> <p>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p> <p>① 감사위원회</p> <p>② <u>내부거래위원회</u></p> <p>③ <u>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u></p> <p>2. 생략</p> <p>3. 위원회에 대해서는 <u>제34조, 제35조, 제36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u>제37조</u>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p> <p>4. <u>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5. <u>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u></p>	<p>제 32 조 이사의 직무</p> <p>1. 생략</p> <p>2.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u>제31조 및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 36 조 위원회</p> <p>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p> <p>① 감사위원회</p> <p>② <u>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u></p> <p>2. 생략</p> <p>3. 위원회에 대해서는 <u>제33조, 제34조, 제35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u>제36조</u>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p> <p>4. <u>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p> <p>5.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u></p>	<p>문구 수정</p> <p>내부거래위원회 폐지</p> <p>정관변경에 따른 참조 정정</p> <p>정관변경에 따른 참조 정정</p> <p>개정상법 제542조의 12제2항 반영</p> <p>개정상법 제542조의 12제8항 반영</p>
---	---	---

<p><u>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이하 생략)</p>	<p>수 있다.</p> <p>6. <u>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u></p> <p>7.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이하 생략)</p>	<p>개정상법 제542조의12제3항</p> <p>개정상법 제542조의12제4항</p>
--	---	---

[첨부 4]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구 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약력
사내이사	윤기석	1963.03.03	3년	신규선임	現 삼일홀딩스 대표이사
사내이사	윤창용	1991.06.10	3년	신규선임	現 삼일에코스텍 대표이사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구 분	후보자 성명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여부 (최근 5년이내)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최근 5년이내)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윤기석	없음	계열회사의 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내이사	윤창용	없음	계열회사의 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첨부 5]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의 수 및 보수 한도액 및 집행액

구분	2021년	2020년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7명(3명)	7명(3명)
보수 한도액	20억	15억
보수 집행액	-	10.7억

* 이사의 수는 해당 사업연도 기말 기준